

참고 1

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개정(안)

시행규칙[별표 2] <개정 2021. 10. 00.>

수수료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인증대행기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

1) 인증평가

구 분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기본수수료	○인건비는 「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」제31조에 따른 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,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인건비로 한다. <table><tr><th>사업장수(N)</th><th>보정계수</th></tr><tr><td>1~2</td><td>1</td></tr><tr><td>3</td><td>0.8</td></tr><tr><td>4~15</td><td>0.8-((N-3)×0.03)</td></tr><tr><td>16~</td><td>0.44</td></tr></table> ○경비는 인건비의 130%를 적용하며,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 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인건비의 130%를 적용한다.	사업장수(N)	보정계수	1~2	1	3	0.8	4~15	0.8-((N-3)×0.03)	16~	0.44																	
사업장수(N)	보정계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
1~2	1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0.8																											
4~15	0.8-((N-3)×0.03)																											
16~	0.44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인증평가원 출장비	○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. ○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인증평가 일수	○하나의 기업이 인증을 하나로 받는 경우 (단위 : 일·인) <table><tr><th rowspan="2">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</th><th colspan="3">최초 인증평가 일수</th></tr><tr><th>문서</th><th>현장</th><th>총일수</th></tr><tr><td>1 ~ 99</td><td>1</td><td>3</td><td>4</td></tr><tr><td>100 ~ 199</td><td>1</td><td>4</td><td>5</td></tr><tr><td>200 ~ 625</td><td>1</td><td>5</td><td>6</td></tr><tr><td>626 ~ 875</td><td>1</td><td>6</td><td>7</td></tr><tr><td>876 ~ 1,175</td><td>2</td><td>6</td><td>8</td></tr></table>	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	최초 인증평가 일수			문서	현장	총일수	1 ~ 99	1	3	4	100 ~ 199	1	4	5	200 ~ 625	1	5	6	626 ~ 875	1	6	7	876 ~ 1,175	2	6	8
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	최초 인증평가 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문서	현장	총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
1 ~ 99	1	3	4																									
100 ~ 199	1	4	5																									
200 ~ 625	1	5	6																									
626 ~ 875	1	6	7																									
876 ~ 1,175	2	6	8																									

	1,176 ~ 2,000	2	7	9
	2,001 ~ 4,000	3	8	11
	4,000 초과 ~	3	10	13
○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의 소상공인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의 인증평가 일수는 인증평가 총일수의 절반이상으로 하며, 문서평가는 하지 않는다.				

영 제7조제3항이 정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평가 일수에서 문서평가 일수를 제외한다.

2) 인증서 재발급

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발급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.

2.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인증평가 업무를 대행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출장비는 동일하고 경비는 제외한다.

참고 2

수수료 개정(안) 신규문 대비표

구분	현행	개선										
	1.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1) 인증평가	1. 인증대행기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1) 인증평가										
기본 수수료	○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, 감가상각비 등 인증대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	○인건비는 「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」제 31조에 따른 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,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인건비로 한다. <table><tr><th>사업장수(N)</th><th>보정계수</th></tr><tr><td>1 ~ 2</td><td>1</td></tr><tr><td>3</td><td>0.8</td></tr><tr><td>4 ~ 15</td><td>0.8-((N-3)×0.03)</td></tr><tr><td>16 ~</td><td>0.44</td></tr></table>	사업장수(N)	보정계수	1 ~ 2	1	3	0.8	4 ~ 15	0.8-((N-3)×0.03)	16 ~	0.44
		사업장수(N)	보정계수									
1 ~ 2	1											
3	0.8											
4 ~ 15	0.8-((N-3)×0.03)											
16 ~	0.44											
		○경비는 인건비의 130%를 적용하며,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인건비의 130%를 적용한다.										
인증평가원출장비	○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. ○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3명으로 산정한다.	○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. ○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한다.										
인증평가원수당	○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 ○수당 산정의 기간은 2일로 하고, 수당 산정의 인원은 3명으로 한다.	○삭제										
	○신설	○하나의 기업이 인증을 하나로 받는 경우 (단위 : 일.인)										

인 증 평 가 일 수		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	최초 인증평가 일수		
			문서	현장	총일수
		1 ~ 99	1	3	4
		100 ~ 199	1	4	5
		200 ~ 625	1	5	6
		626 ~ 875	1	6	7
		876 ~ 1,175	2	6	8
		1,176 ~ 2,000	2	7	9
		2,001 ~ 4,000	3	8	11
		4,000 초과 ~	3	10	13
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의 인증평가 일수는 인증평가 총일수의 절반이상으로 하며, 문서평가는 하지 않는다.					
영 제7조제3항이 정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인증을 받는 때를 포함하고, 제수수료는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		영 제7조제3항이 정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평가 일수에서 문서평가 일수를 제외한다.			
2)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인건비·사무실 운영비·감가상각비 등 인증 대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		2)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발급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.			
2.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등 인증평가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		2.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인증평가 업무를 대행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출장비는 동일하고 경비는 제외한다.			

참고 2

개정예정 시행규칙 [별표2] 및 폐지예정 고시

시행규칙[별표 2] <개정 2017. 7. 26.>

수수료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

1) 인증평가

구 분	금 액
가. 기본수수료	○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, 감가상각비 등 인증대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이 정한 금액
나. 인증평가원 출장비	○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. ○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3명으로 산정한다.
다. 인증평가원 수당	○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 ○ 수당 산정의 기간은 2일로 하고, 수당 산정의 인원은 3명으로 한다.

영 제7조제3항이 정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인증을 받는 때를 포함하고, 제 수수료는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2)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

인건비·사무실 운영비·감가상각비 등 인증대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2.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등 인증평가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

[시행 2018. 12. 12.][행정안전부고시 제2018-81호, 2018. 12. 12., 제정]

1. 인증평가 수수료 : 800,000원/일·인

2. 인증평가 일수

(단위 : 일·인)

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	최초 인증평가			재인증 평가
	문서	현장	계	
1 ~ 99	1	3	4	4
100 ~ 199	1	4	5	4.5
200 ~ 399	1	5	6	5
400 ~ 625	1	5.5	6.5	5.5
626 ~ 875	2	5.5	7.5	6
876 ~ 1,175	2	6	8	6.5
1,176 ~ 2,000	2	7	9	7.5
2,001 ~ 4,000	3	8	11	9
4,001 ~ 6,000	3	10	13	10
> 6,000	위의 증가율에 따름(수수료는 단가 기준 이하 별도 책정)			

※ 비고

1. 출장비는 별도산정 한다.
2. 인증평가 업체의 외부용역 인력은 50%를 적용한다.
3. 인증평가 업체 종업원 수가 6,000명을 넘는 경우 수수료는 단가 기준 이하에서 인증대행기관이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